

정 관



원본대조필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연정원

[정 관]

2022.10.15. 제정

2026.03.21. 일부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 목적

제4조 사업

제5조 본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제7조 회원의 급수 등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제10조 회원의 징계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자격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방법

제13조 임원의 임기

제14조 임원의 직무

제15조 상임이사, 지부장의 임무

제16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제17조 감사의 기능

제18조 고문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제20조 총회의 소집

제21조 총회의 기능

제22조 의결 정족수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제24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제26조 이사회 기능

제27조 이사회 회기 및 소집

제28조 의결정족수

부칙

제29조 이사회 의결제척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제32조 소위원회

제6장 기획국

제33조 기획국

제7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

제8장 교육국

제35조 교육국

제9장 학술원

제36조 학술원

제10장 심사평가원

제37조 심사평가원

제11장 지부 및 기타 기구

제38조 지부

제39조 기타 기구

제12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산의 구분

제41조 재산의 관리

제42조 기부금 등 경비의 조달

제43조 세입세출예산

제44조 세계잉여금

제45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제46조 회계 연도 및 결산

제47조 임원의 보수 등

제4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제49조 회계감사

제13장 보칙

제50조 정관의 개정

제51조 후원회

제52조 시행세칙

제53조 법인해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연정원” (이하 “본회” 라 한다)이라 칭한다.
- ② 본회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 Yeon-Jung-Won” 으로 하고, 약칭은 “K.Y.J.W” 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통해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고 전통 문화를 진흥시키며 민족, 고유의 조식수련법(조식, 명상)과 도인수련법(기체조)을 보급하여, 국민의 심신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민족 고유의 수련법이고, 봉우(鳳宇) 권태훈(權泰勳) 선생께서 전하신 지감(止感), 조식(調息), 금촉(禁觸)의 정신수련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정신문명에 바탕한 물질문명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지위를 회복하고, 평화 세계를 건설함으로써,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조식 수련법의 교육과 보급
2. 조식 수련법 수련사, 전문교육자(사범)의 양성과 지원
3. 체술 등 전통 체력 단련법의 교육과 보급
4. 전통 정신문화의 연구와 지원
5. 정신문화사 연구, 역사적 정신문화 인물에 대한 현창, 사적의 발굴, 보존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본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회 목적사업의 참여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정조식법에 관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급수 등)

- ① 본회의 회원에 대하여, 교육 이수 내용, 성과, 연정조식법 수련의 경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소정의 급수와 자격을 부여한다.
- ② 급수와 자격의 평가 기준은 심사평가원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이미 납부된 회비 및 찬조금, 기부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 ④ 기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원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회원자격정지,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아무 연락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자격)

- ①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원장) 1인, 이사 9인이상 15인(이사장(원장) 포함)이하, 감사 2인, 지부장을 둔다.
- ② 모든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①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지부장은 별도의 세칙에 따라 각 지부별로 1인을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이사장 제외)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지부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임원의 임기가 만료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본회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지부장은 이사장(원장)으로부터 지부 업무에 관한 일반적 위임을 받아 지부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상임이사, 지부장의 임무)

- ① 이사장(원장)은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기타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기획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② 지부장의 임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원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임무를 대행하며, 각각의 유고가 동시에 발생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원장)과 상임이사 직무대행의 선출은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최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감사의 기능)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 및 예산결산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위의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이사장(원장)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④ 제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원장)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8조 (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와 추천으로 이사장(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이사장(원장)이 소집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음력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이사장(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1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포함), SNS, 기타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중요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위임자제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 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⑤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열고 결의 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취임,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 및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이사장(원장) 등 임원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
- ⑥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2조 (소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일정한 사업이나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상시 또는 임시의 기간을 정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소위원회의 직제,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기획국

제33조 (기획국)

- ① 이사장(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기구의 사무를 조율하거나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국을 둔다.
- ② 기획국에는 기획국장(상임이사) 및 기획국장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직원, 기획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기획국의 직제,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 본회의,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① 사무국에는 국장 및 이를 보좌하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직제,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교육국

제35조 (교육국)

- ① 조식 수련법의 교육, 보급, 수련생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국을 둔다.
- ② 교육국에는 교육국장, 사범 및 국장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직원, 교육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교육국의 직제,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학술원

제36조 (학술원)

- ① 연정원 목적 사업을 학문적,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학술원을 둘 수 있다.
- ② 학술원에는 학술원장, 학술위원 및 학술위원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학술원의 직제,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심사평가원

제37조 (심사평가원)

- ①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고, 회원에 대한 교육성과와 회원의 수련 성과를 평가·인증하며, 급수와 사범 등 자격을 부여하는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심사평가원에는 심사평가원장, 심사평가위원 및 이들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고, 심사평가위원은 이사 중 2인, 학술위원 중 2인, 사범 중 2인 의 6인으로 구성한다.
- ③ 심사평가원의 직제,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지부 및 기타 기구

제38조 (지부)

-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별 자율적 회원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 또는 이사장(원장) 직할의 전문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 지부는 지부의 관할구역 내에서 지부 사무소와 분관(수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각 지부의 직제,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기타 기구)

- ① 연정원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국, 스포츠국, 전통문화과 학국 등의 별도 기구를 상시 또는 존치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별도 기구의 직제,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및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세입계 잉여금 적립금

제41조 (재산의 관리)

① 제40조 ①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기부금 등 경비의 조달)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 등의 교육연수비, 회원의 회비, 회원 등의 기부금 및 보조금, 자산에서 생긴 수익,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기부금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44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5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6조 (회계 연도 및 결산)

- ① 본회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 ②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임원의 보수 등)

- ① 본회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상근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경비등의 금액,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 ① 재산은 본 회와 다음 각호 1에 해당 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회 설립자

2. 본 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①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 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9조 (회계감사)

- ①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50조 (정관의 개정)

- ①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후원회)

- ① 본회의 운영에 재정적인 지원 및 발전에 협조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 운영규칙은 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5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3조 (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서울특별시

부칙(2026. 3. 21. 일부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본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들의 임기는 종전 정관에 의하되, 연임의 허부와 연임 가능 횟수는 본 정관에 따른다.

2026년 3월 21일 (사)한국단학회 연정원

의장 이사장 성태용 (인)

출석이사 최병호 (인)

출석이사 김정인 (인)

출석이사 조용진 (인)

출석이사 류지현 (인)

서울특별시

연정원 기구표

